

계약직 직원 관리규정

제	정	2004. 10. 27
개	정	2007. 04. 30
개	정	2010. 03. 29
개	정	2015. 03. 26
개	정	2023. 08. 17
개	정	2024. 02. 05
개	정	2025. 05. 30
개	정	2025. 12. 0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계약직 직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 의한 계약직 직원의 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기획 및 경영 전문가
2.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요하는 특수직무 분야에 긴급히 필요한 자
3. 감사부서의 장(개방형 감사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3.8.17.>
4. 개방형 정책협력실의 장(채용자격 기준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5.30.>

제3조(구분 및 근무형태) ① 계약직 직원은 재단 인사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전문적인 지식, 경력, 업무량 등을 감안, 직위별 대우로 구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직위 대우에 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협의하여 별도의 대우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② 계약직 직원의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 임 : 복무규정에 규정된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근무
2. 비전임 : 근무 장소를 재단으로 아니 하거나, 출근 근무시간이 비상임 또는 1일 8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제 근무형태를 말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방법은 계약에 의함

제4조(성실의 의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계약사항과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채용

제6조(채용)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직 직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사유
2. 채용예정 직종 및 등급
3. 담당예정 직무 및 부서
4. 채용기간
5. 소요예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재단 인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재직 시 징계, 형사사건으로 면직된 자

제8조(채용기간)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채용절차) ① 계약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하며, 재단을 “갑”으로 계약상대방을 “을”로 하는 계약직 채용계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월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채용절차에 관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보직 및 겸직) 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업무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5.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7일 이상 무계 결근하였을 경우
 6. 법령 및 재단의 내규를 위반한 경우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② 6월 이상 근속한 전임 계약직을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20일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무 및 보수

제12조(복무) 전임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 취업규정(이하“재단규정”이라한다)에 준한다.

제13조(보수) ① 보수의 지급기준 계약에 의한 직급별 대우에 상응하여 “별표 1”과 같이 지급하되, 재단규정에 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협의하여 별도의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2024.2.23.>

②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월급으로 지급하며, 지급일은 재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수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연·월차 휴가기간을 초과한 유계결근기간
2. 무계결근기간

제15조(비전임 계약직 직원의 보수) 비전임 계약직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 기준의 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시 정한다.

제 4 장 퇴직금 및 보건위생

제16조(퇴직금) 계약직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단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건 및 후생안전) 계약직 직원은 근무 중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 직원에 준하여 안전보건 또는 후생규정을 준용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8조(재해보상) 계약직 직원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때에는 재단 직원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여비 등) 계약직 직원이 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26.>

근로계약서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

(제9조 관련)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사업주”라 함)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 [illegible]



진 및 편익도모에 앞장 설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임 용 :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 등의 임용사항(인사발령)은 재단과 변경 계약한 것으로 본다.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무 할 수 있다.
- 퇴직금 :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단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화:031-783-8000)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별표 1]

<신설 2007.4.30.>.<개정 2024.2.05.>

계약직직원 봉급 기준표

(제13조 관련)

전문 및 일반 계약직 직원

(단위 : 천원)

구 분	적용 대상	상한액	하한액	비고
나 급 / 3 호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규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고용되는 계약직	-	55,096	
다 급 / 6 호	일반직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규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고용되는 계약직	49,238	24,806	
라 급 / 7 호	일반직 또는 기술관리직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규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고용되는 계약직	41,411	19,870	
마 급 / 8 호	일반직 또는 기술관리직 6급 또는 7급 이에 상당하는 정규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고용되는 계약직	35,341	16,186	

[별표 2]

<신설 2023.8.17.>

개방형감사 채용자격 기준

직	급	자격기준
계 약 직 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

<신설 2025.5.30., 개정 2025.12.03.>

개방형 정책협력실장 채용자격 기준

직	급	자격기준
계 나 (정책협력실장)	약 직 급	1.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또는 5급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2년이상 근무한 자 2.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국장)급으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부장급으로 8년이상 근무한자 3. 해당 분야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 4. 상시근로자 100명(기업정보공개자료 기준)이상 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전문예술법인(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